산중총회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91조 제2항, 제3항,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중총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불기2569(2025).09.10 개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중총회라 함은 교구본사가 소재하는 산중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산중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 3조 (산중총회의 관장사항) 산중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 다만 교구본사가 총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
3. 종헌 종법에 의한 산중총회의 관장 사항

제 4조 (의장) ①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③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되었거나 의장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지방종정법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본사주지를 추천하는 산중총회에서 당해 교구의 본사주지가 후보자가 될 때에는 산중총회의 집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5조 (회의 소집과 의결) ① 산중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불기2559(2015). 3. 18. 개정]

1.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50일 내지 30일이 달한 때
2. 총림 방장 임기만료일 전 6개월이 달한 때
3. 총림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
4.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불기2559(2015). 3. 18. 신설]

② 산중총회는 교구본사 주지가 소집하며,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는 제4조 제3항의 대행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산중총회는 개회일 전 20일까지 종단 기관지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중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제4호의 경우 소집권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권자가 기일 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불기2568(2024). 3. 19 개정][불기2569(2025).09.10 개정]

제 6조 (구성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2.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불기2557(2013). 3. 20 개정] [불기2563(2019). 3. 27 개정]
3.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불기2557(2013). 3. 20 개정]
4.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 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불기2557(2013). 3. 20 개정]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나.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불기2565(2021). 9. 10 개정]

3. 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불기2563(2019). 3. 27 개정] [불기2565(2021). 9. 10 개정]

4. 삭제 [불기2565(2021). 9. 10 삭제]

5. 삭제 [불기2565(2021). 9. 10 삭제]

6. 삭제 [불기2565(2021). 9. 10 삭제]

7.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불기2565(2021). 9. 10 개정]

9. 교구본사를 이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불기2565(2021). 9. 10 삭제]

11. 타 교구 재적승으로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자

제 7조 (구성원 명부 작성) ①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의 따라 구성원 명부를 작성하고, 산중총회일 전 7일까지 3일간 열람하도록 한다.[불기2557(2013). 3. 20 개정]

② 구성원은 구성원명부에 누락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재되어 있을 때는 구성원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불기2569(2025).09.10 개정]

③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에 대한 이의가 신청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중총회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8조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한다.

제 9조 (본사주지 자격 등) ①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인 비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3(2019).09.19>

2.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개정 불기 2563(2019).09.19>

5.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6. 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개정 불기 2563(2019).09.19, 불기 2569(2025).03.26>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주지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선거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불기 2558(2014).06.25, 불기 2563(2019).03.27>

제10조 (본사주지 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산중총회 개회일 전 10일까지 3일간 관할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9조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종법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본사주지 후보자 등 자격심사) ①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구성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구성원에 대하여 총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산중총회 개회일 전 3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구성원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① 본사주지 후보자가 1인 등록한 때에는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중총회를 개회하며,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한 것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한 때에는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 다만, 산중의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최종후보자로 선출한다.[불기2559(2015).03.18.개정][불기2569(2025).09.10 개정]

1. 삭제 [불기2559(2015).03.18.]
2. 삭제 [불기2559(2015).03.18.]
3. 삭제 [불기2559(2015).03.18.]

③ 삭제 [불기2559(2015).03.18.]

④ 삭제 [불기2559(2015).03.18.]

⑤ 삭제 [불기2559(2015).03.18.]

제13조 삭제 [불기2559(2015).03.18.]

제14조 (추천위원회에서의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불기2559(2015).03.18.본조 개정]

제15조 (행위 제한) 산중총회의 구성원과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된다. [불기2559(2015).03.18.개정]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2. 본사주지후보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집회의 개최
3. 산중총회 개회일 전 3개월 이내에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불기2559(2015).03.18.개정]
4. 말사주지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5. 기타 종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16조 (산중총회 질서유지) ① 의장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산중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당해 산중총회에서 발언함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조 (산중총회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 개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 ① 제15조 3호, 4호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불기2559(2015).03.18. 개정]

1. 삭제 [불기2559(2015).03.18.]
2. 삭제 [불기2559(2015).03.18.]

3. 삭제 [불기2559(2015).03.18.]
4. 삭제 [불기2559(2015).03.18.]
5. 삭제 [불기2559(2015).03.18.]
6. 삭제 [불기2559(2015).03.18.]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불기2559(2015).03.18.개정]

1. 산중총회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자
2. 산중총회장 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3. 제15조 1호, 2호, 5호의 행위를 한 자 [불기2559(2015).03.18.신설]

③ 타인을 사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게 한 자는 행위를 한 자와 동일한 징계에 처한다.

제19조 (가중처벌) ①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을 제한한다.

②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③ 제2항에서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 할 때까지 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20조 (주지 직무대행) ① 산중총회에서 기일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때는 종헌 제92조제2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주지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③ 주지직무대행자는 임기내에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규정) ① 산중총회의 회의 절차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중앙종회법으로 규정된 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선거법을 준용한다.

제22조 (종령사항)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불기2556(2012). 9. 18 전부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제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무원법 <별표> 교역직 종무원 자격표의 본사주지 연령 '70세 이하'를 '만 70세 미만'으로 개정한다.

② 지방종정법 제8조제2항의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승려'를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승려'로 개정한다.

부칙 [불기2557(2013). 03. 20.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2014년 10월 1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3월 18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3(2019)년 3월 27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3(2019)년 9월 19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5(2021)년 9월 10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8(2024)년 3월 19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9(2025)년 9월 10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9(2025)년 11월 5일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